

광양시 금고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702
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 : 2001. 2. 14.

제안자 : 서옥기 의원 외 4인

1. 제안 이유

- 광양시 금고의 합리적인 선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금관리의 효율성·투명성·안정성 및 민주성을 기하기 위함.

2. 주요 골자

- 금고의 선정(안 제2조)
 - 공개경쟁 또는 제한경쟁 방식 원칙
 -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함
 - 회계 구분없이 한 개의 금고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- 선정기준(안 제 3조)
 - 재무구조의 건전성 및 대내외적인 신용도
 - 주요 금융상품별 운용수익률
 - 시민의 편익 및 지역사회 기여도
 - 금고관리 업무에 대한 취급능력
 - 시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 등

○ 선정심의위원회 구성(안 제4조)

- 공인회계사, 변호사, 세무사, 시관계 공무원 2인, 시의원 2인, 시민 단체대표등 총 9인 이내로 구성
-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호선
- 위원의 위촉 활동기간은 금고계약만료 90일전부터 계약체결시 까지

○ 금고선정 절차(안 제5조)

- 금고계약만료 80일전까지 시보에 공고하고, 은행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에 통보
-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은 금고계약만료 50일전까지 제안서 제출
- 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를 금고계약만료 4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

○ 금고선정의 공표와 약정(안 제6조)

- 금고계약만료 30일전까지 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과 약정체결

○ 금고의 중도해지와 재계약(안 제7조)

- 해지사유 발생시 지체없이 금고운영평가위원회를 구성 해지여부 결정
- 중도해지시 재계약은 당초 계약의 잔여기간으로 하되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2년을 추가한 기간으로 함.

광양시 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광양시(이하 “시” 라 한다) 금고취급 금융기관(이하 “금고” 라 한다)의 합리적인 선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금관리의 효율성·투명성·안정성 및 민주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금고의 선정) ①금고선정은 공개경쟁방식 또는 제한경쟁방식에 따라 하여야 한다.

②선정된 금고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.

③금고는 회계의 구분없이 한 개의 금고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특별히 구분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복수로 선정할 수 있다.

제3조(선정기준) ①금고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금융기관 심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1. 재무구조의 건전성 및 대내외적인 신용도
2. 주요 금융상품별 운용수익율
3. 시민의 편의 및 지역사회 기여도
4. 금고관리 업무에 대한 취급능력
5. 시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
6. 기타 금고선정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의 의결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

②금고선정을 위한 세부기준 및 금융기관 심사항목은 제1항 각호의 범위내에서 심의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.

제4조(심의위원회 구성) ①시장은 금고선정을 위하여 공인회계사· 변호사· 세무사 등 관련전문가와 시 관계공무원 2인, 시의원 2인, 시민단체등 총 9인 이내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,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한다.

②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호선한다.

③위원의 위촉·활동기간은 금고 계약기간 만료 90일전부터 새로운 금고 계약이 체결되는 날까지로 한다.

④심의위원회는 제3조에 의거 금고선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,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평가·심사한다.

제5조(금고선정 절차) ①시장은 금고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금고계약기간 만료 80일전까지 제4조 제4항의 금고 선정 세부기준 등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시보에 공고하고, 은행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②금고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은 금고계약기간 만료 50일전까지 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심의위원회는 금고선정 세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이 공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·심사한 후 그 결과 심사표를 금고계약 기간만료 4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표 제출일로부터 5일이내에 금고를 선정하여야 한다.

제6조(선정의 공표와 약정) ①시장은 금고 선정 결과를 즉시 시보에 공고하고, 금고계약 기간만료 30일전까지 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②약정서에는 각종 법령·조례·규칙의 준수 의무, 세입 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, 일시차입 및 기채, 배상 및 변상책임, 계약해지, 계약조문 해석, 유효기간 등을 필수사항으로 기재하여야 한다.

③시장은 금고선정과 관련한 자료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7조(금고의 증도해지 및 재계약) ①시장은 국내·외 금융시장이 혼란 또는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현재의 금고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약정서상 해지 사유 발생시 지체없이 금고운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금고 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②금고운영평가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③증도 해지시 재계약은 당초계약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 다만, 잔여기간이 1년미만인 때는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잔여기간에 2년을 추가한 기간으로 한다.

제8조(자금운용 상황보고) ①금고는 일반회계, 특별회계, 각종 기금의 자금 운용 상황을 상·하반기별, 또는 매분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 과목별금액, 예치기간, 금융상품별 수익률, 이자수입 총액, 기타 금고운영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제9조(실비변상)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 참석시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광양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규정) 이 조례의 공포일 현재 체결되어 있는 금고약정은 약정 기한까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.